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인정보 유출등의 즉시 신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74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6. 2. 9.
3. 회 부 일: 2026.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처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출등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출 등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관할 수

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② (생략)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u>지체 없이</u>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u>즉시</u> ----- ----- ----- ----- <u>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¹⁾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²⁾

○ “지체 없이”로 규정된 유출등의 신고 시기는 시행령에서 “7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³⁾ 보호위원회는 유출 현황, 유출 원인 등을 파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 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

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EU 등 국제 기준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⁵⁾ 구체적인 신고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⁶⁾

□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신고 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급박한 침해사고(네트워크 공격)로 인한 추가 피해와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신고가 요구되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유출 범위·대상·경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4) EU GDPR은 72시간 이내로 명시, 싱가포르의 3일 이내로 명시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빠르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받은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발생 시 불법 다크웹 거래, 랜섬웨어, 피싱 등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개정안은 해커 등 범죄조직의 범행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고 개인정보 불법거래·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신고 기한을 ‘즉시’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특성상 피해 규모 및 원인 파악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행 신고 기준이 국제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단순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수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까지 의무적으로 경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위원회는 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유출 원인 등 파악에 소

요되는 시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경찰 수사 등 필요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바 일률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와 보호법익과 규율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즉시 신고 의무는 사업자 현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률적인 수사기관 통보 역시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함.

□ 그 밖에 법제적인 사항으로, 개정안의 조정대상이 되는 법 제34조의 규정은 법률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2026. 3. 10.에 일부개정되어 2026. 9. 11.에 시행될 예정이므로⁷⁾ 이에 맞추어

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법률 개정문 등에 대한 형식적인 보완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08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